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오염토양 반출 정화 특례 등〉

■ 김종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074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오염토양 반출 정화 특례 등	2
2. 장기분할상환 대상 사업 확대	7
2. 공장 신설 및 부담금 감면 특례	1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종양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7. 22.
3. 회부연월일 : 2024. 7.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사업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사도 오염토양 정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장기분할상환 대상을 사회기반시설 까지 확대하고,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 추진 시 감면 받을 수 있는 부담금을 추가하여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며, 공장시설 업종제한을 폐지하여 다양한 산업시설군 유치 및 입주기업 진입규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등).

Ⅲ. 검토의견

1. 오염토양 반출 정화 특례 등

개정안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사업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사에 오염토양 정화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2조제9항 및 제10항).

현행	개정안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① ~ ⑧ (생략) <신설>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 ③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는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신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사업시행자) ①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행할 수 있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에서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에도 불구하고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⑩ 국방부장관은 토양 오염 제거와 관련하여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화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 구역법」”이라 함)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등 처분 전에 토양오염을 제거하여야 하며¹⁾,

이때, 토양오염 정화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부지가 협소하거나 도시 지역안의 건설공사 현장이거나, 토양오염이 발생한 부지가 같은 시·군·구 내에 흩어져 있는 경우로서 토양정화업자가 오염부지 중 어느 한 곳에 설치한 시설을 이용하여 한꺼번에 정화하는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반출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²⁾

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⑤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제5호의 사업시행자를 제외한다)가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의 계속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
2. 국방부장관이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의 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복구를 의뢰하는 경우

2)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 ① 오염토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하여야 한다.

②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등록한 토양정화업자를 말한다)에게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용제류(有機溶劑類)에 의한 오염토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오염토양은 정화책임자가 직접 정화할 수 있다.

③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는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의 협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부지에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기 위하여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④ ~ ⑨ (생략)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반출정화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토양오염도가 제1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건설공사 현장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는 경우 오염원 반출에 따른 2차오염 확산이 방지되고, 모니터링 및 검증단계에서 얻어진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높은 반면, 현장에 정화시설을 갖추는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반출정화 방식에 비해 토양오염 정화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음.

[처리 위치에 따른 정화방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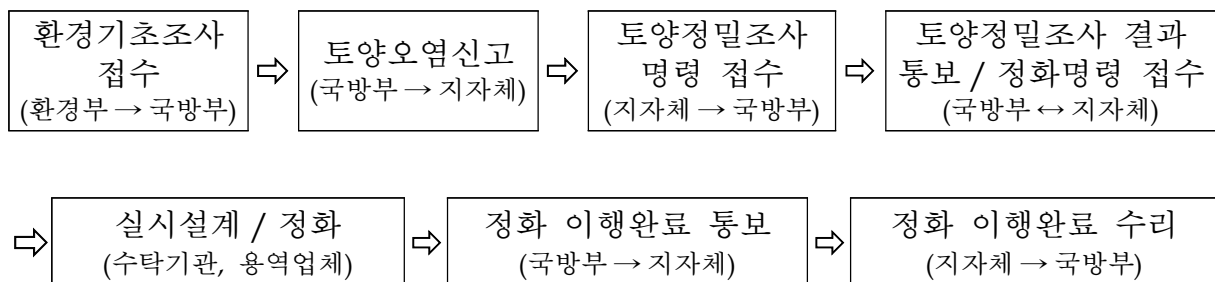
구 분	개 요	장 점	단 점
현장 외	오염토를 굴착한 후 처리시설이 설치된 새로운 처리지역(반입정화시설)에 오염토양을 옮겨 처리하는 기술	- 정화시설물 설치비 절감 신속한 오염 제거가 가능 → 지역주민 민원해소 - 부지 내 화학물질(산세척제 등) 미 반입	- 반출정화대상 범규검토 및 유관기관 협의 필요 - 이송에 따른 부대비용 발생 - 운반차량에 의한 교통혼잡 가능성 존재
현 장 내	지중 처리	- 굴착이 불가능한 구간의 정화가 가능함 - 굴착 시 발생하는 환경문제가 없음	- 정화기간 장기화 가능성 - 정화성과 판단의 어려움
	지상 처리	- 오염토양을 굴착한 후 오염부지 내에서 정화시설물을 설치하여 오염물질을 분해·제거하는 기술 - 지중정화에 비해 정화목표 농도 달성이 용이 - 모니터링 및 검증단계에서 얻어진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높음 - 외부정화에 의한 2차오염 확산 방지	- 정화시설을 갖추는데 추가 비용소요 - 지역주민 민원발생 예상 → 부지전면 통제 → 부지 내 화학물질 반입

※ 자료 : 한국환경공단 토양정화사업 설명자료

2. 토양오염물질 운송차량의 전복 등 긴급한 사고로 인한 오염토양으로서 즉시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3. 오염토양의 양이 5세제곱미터 미만으로서 현장에서 정화하는 때에는 정화효율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
4. 영 제5조의8제2항, 제8조의3제2항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오염토양 정화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정도 및 기술적 한계 등으로 최초 조치명령기간 내에 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로서 법 제15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의 정화과정 검증결과 반출하여 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다만, 법 제1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초 조치명령기간 내에 본문에 따른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5. 토양오염이 발생한 부지가 같은 시·군·구 내에 흩어져 있는 경우로서 오염부지의 소유자 또는 정화책임자가 같고 각각의 오염부지에 토양정화시설을 모두 설치하기 곤란하여 토양정화업자가 오염부지 중 어느 한 곳에 설치한 시설을 이용하여 한꺼번에 정화하는 경우(정화 대상 오염토양 전부를 하나의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오염토양을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따라서 반환공여구역의 경우, 해당 부지에서 정화 절차를 거쳐 토양 오염 정화가 끝난 이후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나, 정화사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행정절차 및 정화기간 2~4년 소요)되어 사업이 장기화되는 측면이 있음.

[반환미군기지 토양오염정화사업 절차]



* 정화사업 규모 및 지역에 따라 문화재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실시

이에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토양환경보전법」에도 불구하고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안 제12조제9항)하고,

국방부장관은 오염토양 정화사업을 한국환경공단(준정부기관), 한국농어촌공사(공공기관) 등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군공여구역법」상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에 따라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사 등에게 오염토양 정화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0항).

중대하거나 시급한 대책사업의 경우 반출정화 특례를 적용하고, 사

업시행자에게 직접 오염토양 정화사업을 위탁할 경우, 개발 사업기간을 단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어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는 것과 반출하여 정화하는 방식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반출정화 특례를 규정한 입법은 없으며,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토양오염 정화 중 반출정화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반출정화대상)에 따라 정화한 1건 있었음.

□ 반출정화 사례

- 반환미군기지 1단계 환경오염정화사업('08년 ~ '11년) 간 동일구역 내 위치한 반환미군기지 정화사업을 통합 발주하여 인접 기지로 반출정화 실시
 - 통합 발주 : 캠프 하우스 등 파주시 소재 5개 기지
 - 캠프 에드워드 오염토양을 캠프 하우스로 반출하여 정화
- ※ 관련 근거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반출정화대상)

2. 장기분할상환 대상 사업 확대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매입비를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안 제14조제2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① (생략)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환공여구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5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만,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종료 전까지 분할상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④ (생략)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만,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종료 전까지 분할상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안 제14조제2항은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지를 매입하는 경우 5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는 대상에 현행 ①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피징발자, 피수용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③주한미군 이전으로 인한 생계 대책 대상자, 이주대책 대상자를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외에 ‘민간사업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있음.

이는 민간사업자가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지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일괄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막대한 토지매입 비용을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에 곤란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자사업의 경우에도 학교, 문화시설, 연구시설 등 공익적인 요소가 있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한하여 장기분할상환 하도록 하여 이들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추가하는 사회기반시설의 경우에도 공익적 요소가 있는 사업들로 기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포함되는 기반시설과 대부분 중복되는 사업들이며 휴양시설, 보훈시설, 병영시설 등이 추가되는 사항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를 촉진하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임.

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³⁾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율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분뇨·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나.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다. 공공청사, 보훈시설, 방재시설, 병영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용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3.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통·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3. 공장 신설 및 부담금 감면 특례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 추진 시 감면 받을 수 있는 부담금을 추가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특례로 신설할 수 있는 공장의 업종 제한을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

[illegible]

현행	개정안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농지법」에 의한 농지조성비, 「초지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생략)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농지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초지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지관리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 제15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및 제8조⁵⁾는 인구와 산업의 집중으로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신설(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인한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권 각 권역에서 공장의 신설·증설·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으나6),

「미군공여구역법」은 그에 대한 특례로 공장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을 신설·증설할 수 있도록 하고

1.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27조제1호, 제27조의2제1호, 제27조의3제1호, 별표 1의2, 별표 2 및 별표 3에서 같다)·증설 또는 이전

[별표 1의2]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

1. 산업단지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2. 공업지역	가.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의 신설 또는 증설 나. 기존공장의 증설(다만, 대기업을 위한 공장은 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기타지역에 있는 중소기업공장의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또는 공업지역 상호 간의 이전(공장건축면적이 기존공장건축면적과 이전 전 지역에서 해당 공장이 증설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범위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기존공장의 기존부지 내에서의 증설 마.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첨단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대기업을 위한 기존공장으로서는 기존공장건축면적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의 증설 바.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3. 기타지역	(생략)

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학교, 공장,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용도변경을 포함하며, 학교의 증설은 입학 정원의 증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공업지역의 지정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공공 청사의 신설 또는 증설

2.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공업지역 지정.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이 적정하게 성장하도록 하되, 지나친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권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6)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경기도 내 권역별 대학 등 학교 신설·이전·증원 규제 현황에 관한 상세는 별첨자료를 참조.

있으며, 신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으로 한정하고 있어 현재 119개 업종⁷⁾만 허용되고 있음.

그러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이미 '09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의 경우 업종 등에 제한 없이 공장을 신설·증설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장신설 업종 제한을 폐지하여 다양한 산업 시설군 유치 및 입주기업 진입 규제를 해소하여 지역개발 가속화 추진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안 제35조) 개정안은 부담금의 감면 사항에 농지보전부담금 및 대채산립자원조성비⁸⁾의 감면을 추가하고 있는데,

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 4] 공장신설 허용업종(제15조 관련)

분류번호	업종명
10501	액상시유(液狀市乳) 및 그 밖의 낙농제품 제조업
21292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24119	그 밖의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24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순도 99.99퍼센트 이상인 고순도의 산업용 가스의 제조업만 해당한다)
24129	그 밖의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24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그 밖의 착색제 제조업
24151	합성고무제조업
24211	의약품 화합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
2421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4221	의약품 약제품 제조업
24230	의료용품 및 그 밖의 의약 관련 제품 제조업
(생략)	(생략)

8)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52조(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52조 관련)

각 부담금은 이미 해당 법률에서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입법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3. 법 제35조제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법 제38조제6항제3호 관련)

감면대상	감면비율(퍼센트)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가. ~ 두. (생략) 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 위치하는 「 <u>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u> 」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지원도시사업구역에 같은 법 제8조·제21조에 따라 확정·승인받은 종합계획·개발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2022년 5월 18일부터 2025년 5월 17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0	50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관리법」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⑤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정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3.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①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23조제1항 관련)

2.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법 제19조제5항제2호 관련)

대상시설	감면비율(퍼센트)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가. ~ 며. (생략) 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 위치하는 「 <u>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u> 」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지원도시사업구역에 같은 법 제8조·제21조에 따라 확정·승인받은 종합계획·개발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로서 2022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법 제15조의 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신청한 시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0	50

문 의 처
02)6788-5336